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식품접근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3조의8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최 기 도)